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89호 2015. 5. 26.(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 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5.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천로356번길 42외 7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 로 명 부 여 사 유 |
|------|-------|-------------------|----------------|------------------|
| | | 별 도 열 략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5. 2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5-22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1-3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356번길 42 (오류동, (주)에이치케이이 | 2012-10-25 |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41, 650-145, 650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40 (석남동) | 2009-07-06 |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 |
| 3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46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240번길 8 (석남동) | 2009-07-06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0-10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5 (경서동) | 2012-03-30 | 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루비존에서 착안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1-5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1번안길 10 (당하동) | 2008-12-31 | 청마로5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 있는 도로 |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5-22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
| | | 변경전 도로명주소 | 변경후 도로명주소 | | | |
| 1 | 인천 서구 석남동 650-143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36 (석남동, 라)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240번길 10 (석남동, 라) | 건물군 분할 | 2009-07-06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 | 인천 서구 석남동 650-143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38 (석남동, 다)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240번길 10 (석남동, 다) | 건물군 분할 | 2009-07-06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3 | 인천 서구 원창동 40-28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4-20 (원창동, (주)삼정이엔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77-8 (원창동, (주)삼정이엔지) | 건물군 분할 | 2009-07-10 |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7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에 대해 설치 및 운영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대관의 범위, 입장료,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1,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자치법규 제정안 요약서

| | |
|------------------|--|
| 자 치 법 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제 정 이 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 주 요 내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제1조~제3조)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제4조~제7조) ○ 대관의범위, 사용허가, 사용료, 입장료, 강습료 등 시설사용에 대한 사항(제8조~제22조) |
| 제 정 안 | “별 지 참 조” |
| 신·구조문대비표 | “해 당 없 음” |
| 관계법령 발취 | “별 지 참 조” |
|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 예산수반 사항 | “별 지 참 조” |
| 기타 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4. "입장권"이란 문화공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입장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6(경서동, 청라복합문화센터)에 둔다.

제2장 센터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 공연·전시
2. 주민의 체육증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3.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양 교육
4. 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6.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시설의 사용

제8조(대관의 범위)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다목적 홀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 ②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수강, 수영장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 또는 추첨제 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센터가 주최하여 진행하는 문화공연·전시·그 밖의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3. 공연장 대관의 경우 문화예술 공연, 전시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 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마.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 취하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 대관 허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아.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자. 센터의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 발행으로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카.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12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공연장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심야 : 22:00 ~

2. 체육시설

가. 조기 : 06:00 ~ 09:00

나. 오전 : 09:00 ~ 13:00

다. 오후 : 13:00 ~ 18:00

라. 야간 :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입장료 징수) ① 센터의 입장료는 공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공연·전시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지정 예매처에서 예약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예매처는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며, 이 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정 예매처 요율에 따른다.

③ 센터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은 서구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서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강습료 징수) ① 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는 시설 등(수영장,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실, 편의 수익시설 냉·난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시설 대관료, 교육 수강료 및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다.

1. 문화·체육 강습료(교육 수강료, 수영장 이용료 등)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
2. 시설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강습료는 서구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 상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서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경기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센터가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무료 공연, 단 유료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 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 · 전시
3.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제16조(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7.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②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하루 전 17시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환불 요구 시

제18조(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5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반환

② 납부된 강습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강습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9조(센터의 임대) ①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강사 배치)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회원모집 등) 센터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모집 할 수 있다.

1. 공연장 회원은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는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 체육시설 회원은 정기과목 수강자에 한해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회원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나.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다.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로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휴관) ① 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관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이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청라복합문화센터 사용료(대관료,이용료) 및 강습료 징수 기준 **(제14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공연 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 까지를 말한다. 단, 체육시설 및 그 밖의 시설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
- 2)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 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가) 공연장의 평일 사용에 한해 09:00~12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60%를, 13:00~17: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70%를, 09:00~17:00 이용시 공간사용료의 80%를 징수한다
 - 나)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실 사용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 사용료에 한함, 장비 사용료는 제외함).
 - 다) 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서구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사용료 및 장비 사용료 포함)
 - 라) 3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 4) 개별기준 중 1)부터 3)까지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 5)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순수예술은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를 말한다. 다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준비 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8) 시연회 및 공개 리허설은 공연 대관료에 준한다.
- 10)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1)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 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 가동 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 6월 ~ 8월 까지, 난방 11월 ~ 3월 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2)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 13)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개별기준

-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 1회)

| 구분 / 시설명 | | 단위 (부가가치세별도) | 순수예술 | 뮤지컬 | 대중음악 / 행사 | 비고 |
|----------|-------|---------------------|---------|---|-----------|----|
| 공연장 | 공연대관 | 1일 | 400,000 | 600,000 | 800,000 | |
| | 연습/준비 | 오전 | 80,000 | 100,000 | 140,000 | |
| | | 오후 | 100,000 | 120,000 | 160,000 | |
| | | 야간 | 120,000 | 140,000 | 180,000 | |
| | | 철야(3시간) | 300,000 | 320,000 | 360,000 | |
| 전시실 | | 1일 (09:00~22:00) | 100,000 | - 분할대관 시 대관료의 50% 적용 - 1일 대관료의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30% 가산 | | |

* 순수예술 :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2.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 개별기준

1) 문화시설 사용료

- 다목적실

(단위 : 원 / 월)

| 구분 | 사용료 | |
|-----------------|--|------------------|
| 문화강좌프로그램 | 10,000 ~ 50,000 | |
| 생활체육 프로그램 | 성인 | 30,000 ~ 200,000 |
| | 중·고생이하 | 25,000 ~ 200,000 |
| 유아 · 초등생 교육프로그램 | 25,000 ~ 150,000 | |
| 유아체능단 | 60,000 ~ 340,000 | |
| 기타 | · 위 사용료는 월 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부터 주 5회 범위 내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 |

2) 체육시설 사용료

- 수 영 장

(단위 : 원/월)

| 구분 | 강습료 | 자유이용 | | 그룹지도 |
|-----|--|-----------------|---------------|-------------------|
| | | 정기 | 1일입장 | |
| 사용료 | 25,000 ~ 80,000 | 25,000 ~ 70,000 | 1,500 ~ 4,500 | 100,000 ~ 200,000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일요일은 제외) ·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퍼센트 할증 | | |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1999. 2.12)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 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